

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해외건설협회간 업무협력 약정서

한국철도시설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과 해외건설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는 해외철도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 성공적인 수행이 국가의 철도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해외철도사업을 개발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협회와 공단의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협력 분야)

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.

1. 해외철도 건설지식과 사업정보의 교환 및 상호협력
2. 해외철도분야 공동 연구
3. 해외철도사업 관련 교육, 설명회, 세미나, 시장조사단 및 초청 행사 등 민관합동 수주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
4. 양 기관의 국내외 간행물을 상대기관 홍보 및 양 기관의 해외 지부·지사를 통한 상대기관의 해외철도사업 수주활동 지원
5. 민관합동 해외철도사업 발굴 협력
6. 기타 해외철도사업의 효율적인 개발 및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3조(정보자료 협조)

양 기관은 정기간행물 및 기타 발간·습득 자료를 상호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제4조(비용부담)

제2조에 규정된 업무협력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, 부담한다.

제5조(협약기간)

본 협약은 양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발생하며,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.

제6조(비밀유지)

본 약정과 관련된 협력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상대기관의 서면동의 없이는 협력업무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·누설 또는 제3자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① 상호 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기관의 정보 중 비밀유지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② 양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.

제7조(협의조정)

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.

제8조(협약의 해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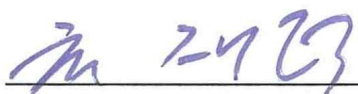
- ① 양기관은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본 협약에서 규정한 제반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양기관은 부도, 파산, 해산된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양기관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9조(기타사항)

- ① 양기관의 제2조 각 호의 협력사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- ② 본 협약서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양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2년 12월 7일



해 외 건 설 협 회
회 장 최 재 덕



한국철도시설공단
이사장 김 광 재